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| | 담당 부서 | IT·핀테크전략국 | | 변남주 선임조사역 | 연락처 | 02-3145-7424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요청대상 행위 | □ 서버접속통제 솔루션을 경유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중요 단말기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| | | | | |
| 판단 | □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
| | □ 라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□ 금융회사는 외부반출, 인터넷 접속,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 단말기를 지정하여야 하며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3호), ○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.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) □ 회사는 단말기의 용도 및 취급 자료의 종류,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중요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○ 「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」('17.5월)에 따르면 중요단말기 유형을 '정보처리시스템 또는 DB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권한이 부여되는 단말기'로 설명하고 있으나, 동 내용은 예시이며 중요 단말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. □ 다만, 중요 단말기 여부와 무관하게 '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'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- **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